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2022년 2차 임시 이사회

○ 일시 : 2022년 6월 7일(화) 오후 1시 발송

○ 진행방법: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관 제6장 제34조 의거한 서면결의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2022년 임시 2차 이사회 안건 목차

▶ 보고 안건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 활동 내용4

기타 보고 사안5

▶ 심의 안건

심의안건1.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2022년 제1차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건6

심의안건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2022년 제1차 임시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건7

▶ 참조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관11

〈주문 사항〉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5월 사무국 활동을 보고합니다.

1.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제1차 사무국회의 보고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제1차 이사회

[일시] 2022년 5월 17일(화) 오후 12시 20분

[장소] 518 행사추진위 회의실

[참석] 권달주 대표, 박경석 부대표, 박대희 이사(오프라인) 임경미 이사, 김용섭 이사(온라인)

[배석] 이재민, 한명희, 서재현, 성가연, 정다운 활동가

▷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6인 중 5인 참석으로 개회

▷ 보고안건

[보고안건1.]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법인 설립 경과 보고

[보고안건2.] 기타보고

▷ 심의안건

[심의안건1.]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지부, 지회설립 관한 건

- 박대희, 임경미, 김용섭, 정기열 이사를 각각 전남, 충북, 강원, 경기 지부장으로 추천 및 임명
- 이외 지역은 사무국의 행정으로 위임

[심의안건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단체 가입에 관한 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단체로 가입

[심의안건3.] 회원모집 및 회비운영에 관한 건

- 장비회원에게 이동권연대 가입 권유
- 장비회원인데 회비 납부를 이동권연대로만 희망할 시 이전, 장비와 이동권연대 정회원직 모두 부여
- 이동권연대 역시 독자적 회원을 조직

[심의안건4.] 사무국 설치에 관한 건

- 사무국장(이재민)과 사무국원(한명희, 서재현, 성가연)을 임명

[심의안건5.] 주관, 주최 명의에 관한 건

- 사무국과 대표에게 일임. 사후보고

[심의안건6.] 기타 심의

- 사무국에 업무상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50만원 지출 자율권 부여

2.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제2차 사무국회의 보고

□ [요약] 2차 이동권연대 사무국회의

- 5.27(금) 오전 10시
- 참석: 가연,재민,명희(오프), 재현(온)

[보고사항]

1. 전체 업무 정리(표)
 - 이동권위원회(간사: 재민)
 - 이동권연대(법인사무국)
 - 기타: 강의등(재민-> 사무국과 함께 논의)
2. 법인설립등기 및 세무서 업무(재현)
 - 법인(단체 성격 변경): 법인 설립허가증+설립등기 발부 후 세무서 발송
 - 법인명 명칭통일 => 등기 후 법원,세무서,은행등의 단체명 통일 필요

[논의사항]

1. 사업계획서작성 및 월별 목표

1) 이동권실태조사 및 연구: 각지자체 특별교통 수단 및 저상버스 현황 정보공개청구

- 연중1회(6월 조사 실시, 8월 발간을 목표로 함)
- 취합방법: 중앙일괄신청(재민), 지역장차연 확인(재현)

=> 일괄신청 양식(&지역 안내 매뉴얼동일): 재민

(메모: 지역별 이동권계획에 대한 내용취합까지 양식으로 추가)

2) 이동권 관련 강의 및 교육

- 강의 요청시 1차, 재민. 2차, 사무국에서 함께 논의

- 다음주 회의에 교안검토하며 같이 상의하기로함.
- 3) 이동권 대시민 캠페인
- 온라인 카드뉴스 발행(가연)
 - 오프라인 노들 권익옹호수업 모니터링(명희)
- 4) 이동권사진전 개최(재현)
- (1,3, 5월) 진행함, 9월 대향로 파티_마로니에공원 행사로 진행 계획.
- 5) 이동권관련영화 촬영 및 보급
- 서울장애인권영화제와 연계하여 진행(&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 6) 이동권관련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1. 이동권 실태조사 결과보고회(&정책적 사안에 따라 보고회의 성격을 달리하여 계획함.)
- 7) 이동권관련 전문서적 및 당사자 사례집 출판: 일단 이후 고민
- 8) UN장애인권리협약 이동권 특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kdf 연계
- 9) 이동권 정책 제안 및 기준심사 위한 민관협의체: 지부&지회 설립후 상의
2. 세부규정신설 및 검토
- 1) 회비 및 회원과 관련하여 정관 개정 사항(명희)
- 정회원 자격조건에 대한 확인필요(후원금/회비의 성격을 달리해야함)
 - 다음회의 까지 명희->경석과 상의
- 2) 지부,지회 등기에 관한건(재현)
- 이사(추가 공고없음)
 - 지부&지회 등록: (충북,강원,전남,경기)는 지부를 둔다. 지회장의 경우 이동권연대 법인의 이사가 됨.
- ⇒ 추가 지부&지회장 공고를 내야함(~다음주 중에 공고를 내자): 재현(EX.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장야협 과도 상의)
- 3) 사업관련 규정변경에 관한 건
- 온라인쇼핑몰, 관련단체 지원 => 추가 하여 정관개정
3. 기부금단체 및 cms통장 개설
- 기부금영수증 등록: 7월10일까지 접수 완료를 해야함.
 - 가연: 다음회의까지 기부금단체 등록에 대한 필요서류,타임라인 공유.
4. 회원등록 및 지부지회 설립의 건
- ⇒ 회원: 배분하기위한 구글 정리중(회의 전공유.) ~6월 10일(2째주 까지 정리.)
1. 정관 개정 필요 사항 최종 점검 (1~4. 정리)
 - 정관 개정안, 규칙 통과, 지부지회 승인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6월 초 이사회 개최

- 6월 15일(이사회), 7월 6일(총회) ⇒ 재민
- 금일 회의 통해 확정된 정관 변경 사항: 사실상 사업 밖에 없음

5. 사무관련 점검

- 후원신청/명함(후원계좌 확정되는 대로) 발주
- 홈페이지 관련(1)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타이틀과 간단 메뉴만 변경. 2) 리뉴얼 홈페이지 8월까지)
- 리플렛 시안(다음주까지_명희)
- 공문발신대장 및 전체 현재까지 자료_구글드라이브(&노션)정리: 재민

6. 인권재단 사람 정을 만남(노션 참고)

#차기회의: 2022년 6월 3일(금) 오전 10시

#회의록 전체보기: <https://www.notion.so/sadd420/2-47c66bde53164e68abfdc794eb5a01e0>

3. [사]전국장애인동권연대 제3차 사무국회의 보고

[요약] 전국장애인동권연대 3차 사무국회의

일시: 2022년 6월3일(금) 오전 10시

참석: 명희, 재민, 가연, 재현

보고 안건

1. 전차 회의 보고: 회의록 참고

2. 법인설립등기 관련 업무

- 이재민 사무국장 보고.

- 이동권연대 회원 모집 및 확인은 6월7일~10일내 진행한다.

- 이동권연대 총회는 국토부의 정관변경 승인 건으로 6/21(화), 시간 미정. (이사 일정을 확인해 총회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는다)

- 9일(목)까지 이사회(서면결의사항)와 총회 일정을 공지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정관개정의 건과 회비 회원규정 승인 건임).

- 총회 안건에 따른 총회 알림 공고문과 줌링크는 명희가 세팅한다.

- 위임장과 참석리스트 확인은 명희와 사무국 활동가가 각각 진행한다.

- 지부지회장 설립 건은 7월 중에 진행한다.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7월6일 내 진행한다.

□ 논의 안건

1. 사업 운영에 관한 건

1) 이동권 실태조사 및 연구

- 이재민 사무국장, 정보공개청구 양식 공유.
- 차량 종류별(장콜, 바우처, 임차택시), 이용자별(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장구 비이용 장애인, 노인 등) 이용현황이 잘 드러나게끔 항목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 공유. 그 외 의견이 나온 여러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수정된 양식을 차기 회의 때 공유한다. [평균승차거리/평균요금, 운행가능지역(실적 외 지역 기명), 차고지 개수와 위치, 차량보유대수(장콜, 바우처, 임차), 차량운행대수(장콜, 바우처, 임차), 콜방식(즉시콜,예약제 등), 위탁기관명, 운영방식(직영 위탁 등), 접수수단(전화, 문자, 홈페이지, 앱), 요금기준]

2) 이동권 관련 강의 및 교육

- 공유된 강의안을 각자 읽어오고, 차기 회의에서 함께 논의.

3) 이동권 대시민 캠페인

- 노들야학&이동권연대_이동권 대시민 캠페인 공동사업 제안관련: 매주 금요일 관련 선전전 진행 계획.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지 참고

4) 이동권 관련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 이동권연대 이름으로 이동종합조사 신청자격과 내용/과정에 대한 간담회 진행 예정. (사무총국 정책실, 이동권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

5) 이동권 관련 영화 보급 및 공동참여

- 6/14 종로장애인권영화제 공동주최 및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영화 배급

2. 회비 운영에 관한 건

- 이동권연대&박경석 부대표 회의 결과 공유
- 기존 장비회원(서울장차연 회원 다수)이 이동권연대로 넘어올 때, 서울장차연 몫 일부를 할당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정관)이 필요
- 전장연 별도 통장으로 서울장차연 몫(7:3)을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3. 지정기부금단체 및 cms/통장 개설

- 가연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다음 주까지 작성 후 공유. 이후 구체화 작업 함께 진행.
- 가연이 야학, 야협, 노란들판에 참고자료 확인.
- 7/6까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완료한다.

4. 회원 등록 및 지부지회 설립 건

- 회원모집 및 확인 ⇒ 2022. 6. 7- 6. 10, 14일(화) 총회 명부 확정 ⇒ 15일(수) 이사회&총회 공지&입후

보 공지

- 지부지회장 공고는 7월 중 진행한다.
- 지부지회장 임기와 선출방식 등에 대한 정관 작업 및 개정이 필요 야협 자료 등을 확인하여 재현 초안 작성 후 재민과 검토

5. 정관 개정 필요사항 최종 점검

- 회원 구분(정회원/후원회원)
- 사업추가(9개)+타 단체 지원 사업
- 지정기부금단체(중요)

6. 자료 정리(구글 드라이브)

- 구글드라이브 내 이동권연대 업무별 폴더 정리
- 사업 관련 내용을 이동권연대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한다

7. 홈페이지 건

- 홈페이지는 신설한다(준호)

*차기회의: 2022년 6월10일(금) 오전10시, 4층 세미나실

*기타 공유사항:

- 6/15 오후 인권재단사람 교육
- 6/13(월)부터 회계 공부 시작

4.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주요 사업진행 현황 보고

- 교육: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소장단워크숍(재민, 2022.05.20.),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회(재민, 2022.05.26.), 참여연대(명희, 2022.06.11.-예정),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아카데미(재민, 2022.06.16.-예정)
- 발제 및 토론: 지역 간 장애인 이동권 차별철폐를 위한 국회토론회(재민, 발제, 2022.04.27.)
시외이동권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임경미 이사, 토론, 2022.04.27.)
이동종합조사 신청자격 및 조사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재민, 발제, 2022.06.13. 예정)
- 영화보급 및 사진전 개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2022.04.30.-2022.05.01.)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2022.06.14.)
- 언론기고: 더레프트(재민, 5월호)

보고안건2 기타보고

<주문 사항>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기타 사항을 보고합니다.

심의안건1 제1차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건

〈주문 사항〉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제1차 임시총회 소집 및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의결해주시요.

1.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제1차 임시총회 개요

- 일시 : 2022년 6월 21일(화) 오후 5시
- 장소 : (오프라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온라인) ZOOM

2.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제1차 임시총회 소집 필요성

- 법인의 투명한 회비 운영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에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예정
-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위해서는 회계 공개·보고, 해산 시 법인 재산 귀속 등의 정관 기재 필요
- 정관은 총회 의결을 통해서만 개정이 가능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시기인 2022년 7월 10일(일) 이전, 조속히 총회 소집 및 정관 개정 필요
- 또한 수정이 필요한 정관의 법인 사업내용 및 회원 조항 개정과 회비 규정 신설을 함께 안건으로 처리, 법인 운영 기틀마련.

3.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제1차 임시총회 예상 안건

- 심의안건 1.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위해 제7장 제39조(재산의 관리), 제11장 제50조(잔여 재산 처리) 개정
 - 장애인 이동 관련 활동 단체 및 사업 지원 위한 제1장 제3조(사업) 개정
 - 정회원 및 후원회원 구분위한 제2장 제5조(회원자격) 개정
- 심의안건 2. 회비 규정에 관한 건
 - 제2장 제10조에 따라 회비의 가액과 납부 방법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이에 대해 안건 상정

심의안건2 제1차 임시총회 안건에 관한 건

<주문사항>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제1차 임시총회 안건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고자 하오니, 의결해주시옵시오.

심의안건 1.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2022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사업들에 대한 시행계획 및 내용, 담당자, 관련 예산들을 총회에서 발제

심의안건 2. 정관개정에 관한 건 [※세부 안은 추후 변경 가능]

[1]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 [재산의 관리]

구(舊)	신(新)
제39조(재산의 관리) ④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9조(재산의 관리) ④ 본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매년 4월 30일 이전까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2] 제11장 해산 제50조 [잔여재산 처리]

구(舊)	신(新)
제50조(잔여 재산 처리)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50조(잔여 재산 처리)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함.

[3] 제1장 총칙 제 3조 [사업]

구(舊)	신(新)
<p>제3조(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중략).....</p> <p>10. 기타 본 법인의 설립 목적 및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사업</p>	<p>제3조(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중략).....</p> <p>(신설) 10.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p> <p>11. 기타 본 법인의 설립 목적 및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사업</p>

- 개정이유: 법인의 주 설립목적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들에게 연구공모, 캠페인 활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련 조항 신설

[4]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자격)

구(舊)	신(新)
<p>제5조(회원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으로 한다.</p>	<p>제5조(회원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신설) 1. 정회원: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하며 사무국에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 이사회 승인 후 정기적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p> <p>2. 후원회원: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p>
<p>제6조(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p>	<p>제6조(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p>

- 개정이유: 법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는 않으나 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회원들을 구분하기 위해 후원회원 신설. 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부담스러워 하는 회원 의견 반영.

심의안건 2. 회비규정 신설에 관한 건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회비 규정

제1조(목적)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회비 납부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납부의 의무) 정회원은 회비를 월 1회 이상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3조(회비 금액 및 납부방법)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정회원은 월 5,000원 이상의 회비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하거나 직접 납부한다. 다만 회비 관련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고 이는 이사회에서 논의한다.

제4조(회비 미납에 대한 징계) 회비를 미납한 정회원 개인에 대하여는 규약에 따라 이사회의의 인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징계에 처할 수 있다.

- ① 회비를 2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은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② 회비를 아무런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은 제명 처리한다.
- ③ 회비 납부에 있어 예외적인 부분은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기타)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및 기타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심익안건3 기타 심의

〈주문사항〉

기타 심의 안전에 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서면결의서

성명: (인)

직위:

주소:

전화:

상기 본인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관 제6장 제34조(서면결의)에 따라 제2차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임시총회 안건 서면의결

※ 해당란에 ○표 하세요.

안건	찬성	반대
가. 제1차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건		
나. 제1차 임시총회 안건에 관한 건		

2022년 6월 7일

정 관

2022. 01. 24 재정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회의

제5장 총회

제6장 이사회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8장 사무국

제9장 지부·지회

제10장 승인

제11장 해산

제12장 보칙

부칙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The Solidarity of Mobility Right for Disabled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며 건축물·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Barrier-Free)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접근·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축물, 여객시설, 교통수단, 도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이동권의 개념 및 현황에 대한 관련 기관 실무자, 정책입안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강의 및 교육
3.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및 문화적 차별 제거 위한 대시민 캠페인
4. 장애인 이동권의 사회적 의제 확산 위한 관련 주제 사진전 기획 및 개최
5. 지하철,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의 이동 현실이 담긴 영화 촬영 및 보급
6. 장애인의 접근,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7.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전문서적 및 당사자 사례집 출판
8. UN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기반 정부 정책·현황 평가 및 민간보고서 제출
9.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 제안 및 향후 계획 논의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
10. 기타 본 법인의 설립 목적 및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을 위한 자원조달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①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에 둔다. ②법인은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로 한정한다)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회원은 법인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3. 본 법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4. 본 법인의 모든 행사 참여에 우선권이 있다.
5. 본 법인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또는 소식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라 규정에 의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권 및 선거권의 위임) 각종 회의에 의결권이 있는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전에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단, 이사회의 경우 대리 행사할 수 없다.

제8조(자격의 상실) ① 회원으로서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
2. 회원이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때
3. 소정의 회비를 납부 기한 내에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탈퇴) 법인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 회비 등) 회원별 회비의 가액과 납부 방법 등 기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상벌) ① 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중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표창하거나, 관계기관 및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임원, 직원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법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부당이익 및 법인 명예를 실추한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등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①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명
2. 부대표 2명 이내
3. 이사 7명 이내 (대표, 부대표를 포함)
4. 감사 2명

② 법인은 필요한 경우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등)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보고한다. ③임원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회원이어야 한다.

제14조(대표) 대표는 본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회의장이 된다.

제15조(부대표)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 또는 회계 그리고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2.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처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의 소집을 요구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②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18조(고문 등) ①법인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추대한다. 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의 자문에 응한다

제19조(대표권의 제한) 본 법인은 대표 이외의 자는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다만, 대표가 필요에 따라 부대표에게 위임한 사안에 한하여 부대표는 이 법인을 대표한다.

제20조(임원의 보수)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임기 등) ①법인의 대표, 부대표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해 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22조(회의 종류) ①법인은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제23조(제척사유) ①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 회의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1. 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경우
3. 이사회 의결 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 건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제5장 총 회

제24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등) ①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회원이 의결권을 지니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소집요구 발생 시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대표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0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개회 및 의결)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관 변경은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의결 사항)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및 담보 등의 승인
7. 목적사업을 위한 외부단체 또는 법인의 출자나 용자 등의 승인
8. 기타 대표가 중요하다고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9조(의결제척사유) 의결제척사유는 제23조에 준한다.

제30조(의사록의 보존) ①총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31조(구성 및 구분) 이사회는 대표, 부대표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32조(이사회 의 소집) ①정기이사회를 연2회 개최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부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임시 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하여야 한다.

④대표는 제2항과 제3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전자문서등 포함)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결원된 이사의 보궐 선출에 관한 사항(대표와 감사는 제외한다).
5. 지부·지회 설치/폐지 및 이전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서면결의) 대표는 이사회 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는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36조(의결제척사유) 의결제척사유는 제23조에 준한다.

제37조(의사록의 보존) ①이사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회의 경과 사항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3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①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2와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9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인의 재산수입은 정관상 목적사업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을 위

하여 사용한다. ④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40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수익사업 수익금(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 무 국

제45조(사무국) ①본 법인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직제·운영·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지부·지회

제46조(지부·지회의 설립 등) ①본 법인은 지부·지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부·지회의 설치 **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수행한다.** ③기타 지부·지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지부 사무국에 대한 구성은 제45조에 준한다.

제10장 승 인

제47조(승인) ①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 재산의 양도·담보·임대·교환 및 채무 부담 행위 등
3.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
4. 법인의 해산

제11장 해 산

제48조(해산) ①법인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산 결의를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해산은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50조(잔여 재산 처리)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12장 보 칙

제5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운영 및 규칙 제정) 법인의 운영 및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본 법인의 초대임원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본 법인의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2년 5월 8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